

제423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3월18일(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5)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8)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7)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6)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5)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3)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0)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7)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1)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1)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0)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6)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5)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0)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1)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0)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9)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6)

2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4)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6)
 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0)
 2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6)
 28.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3)
 29.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6)
 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2)
 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4)
 3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6)
 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2)
 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0)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6)
 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7)
 3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7)
 3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9)
 3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2)
 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2)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9)
 4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4)
 4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809)
 4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8)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8)
 4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9)
 4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6)
 4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2)
 4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1)
 50.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3)
 5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0)
 52.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5)
-

상정된 안건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5) 4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8) 4
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7) 4

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6)	4
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5)	4
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3)	5
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8)	25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0)	25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7)	25
1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1)	25
1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1)	26
1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0)	26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6)	26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3)	26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5)	26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0)	26
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6)	26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5)	26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1)	26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0)	26
22.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9)	26
2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6)	26
2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4)	26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6)	26
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0)	26
2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6)	26
28.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3)	26
29.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6)	26
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2)	26
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4)	26
3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6)	26
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2)	26
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0)	26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6)	26

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7)	26
3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7)	26
3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9)	26
3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2)	26
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2)	26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9)	26
4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4)	26
4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809)	26
4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8)	26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8)	26
4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9)	26
4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6)	27
4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2)	27
4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1)	27
50.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3)	27
5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0)	27
52.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5)	27

(10시42분 개의)

○**위원장 박주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기일 보건복지부1차관님은 국무회의 대리 출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청하셔서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기일 차관님은 국무회의가 종료되는 대로 위원회에 출석하실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듣고 의결한 다음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5)
 2.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38)
 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7)
 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6)
 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5)

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3)

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박주민**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우 소위원장께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강선우 위원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김윤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미애 의원, 이수진 의원, 서명옥 의원, 안상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로 설치해 수급추계를 심의토록 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하여 보건의료인력별 양성 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단체, 수요자 대표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공급자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고 회의록 및 참고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에 있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면 교육부장관이 이를 존중하여 2026년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되 이러한 과정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각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 30일까지 2026년 의대 모집 인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의과대학의 학장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법안의 형태로 만들어져 대표발의가 된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감원 가능성을 명시한 안으로 재수정돼 대표발의가 된 것 역시 그해 11월입니다. 그러나 12월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은 심사가 불발됐고 이후 1월 법안소위에서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경청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2월이 됐습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 가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더 담아내자는 취지로 공청회까지 열었습니다. 12명의 참고인 중 의료계 추천이 6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 중 대한의사협회 추천이 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청회 이후 다시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의협은 자신들이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의견만 표명했습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여야 간사, 정부, 의협이 함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고 의협에서 원하는 안에 대해 계속 묻고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최대치로 반영한 최종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수급추계위에서 대한병원협회를 공급자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

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마저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의협은 2025년 2월 24일자 공문을 통해 ‘귀 부가 제안한 대안에는 우리 협회가 제시한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답변했을 뿐입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소위에서는 그간 진행된 일련의 모든 논의 과정을 토대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가능한 최선의 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의협은 법안소위 통과 전 국회와 정부가 제시했던 최종안의 내용을 이번 전체회의에서 다시 반영해 줄 것을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법안소위에서 논의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까지 거친 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입니다. 이를 특정 직역단체 이해관계 논리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수정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단지 소위를 무력화시켜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조정하며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할 우리 국회가 가장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칙을 파기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계의 거듭된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가 늦어지며 법안소위 통과 당시 부칙과 관련해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부칙의 내용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속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민 부칙 수정 관련된 자료를 배부하면 되나요, 간사님?

○강선우 위원 예.

○김미애 위원 정부안이 있어요.

○위원장 박주민 일단은 수정안을 배부해서 한번 보시고요.

대안 관련돼서 정부 쪽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등을 통해서 좀 토론을 하시고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부칙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심사 결과 보고에서 강선우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저희가 수정대안을 여야 위원님께 건의드리게 된 것은 첫째, 법안 발의 이후 시간이 경과돼서 2026학년도 입시 일정상 현실적으로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서 26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3월 7일 사회부총리께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총장님들의 건의에 따라서 내년도 입시에 있어서의 중원 규모를 0으로 하고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모집 인원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신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대로 부칙을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부칙에 고등교육법에 관한 특례를 포함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대안을 냈는데, 수

정대안의 취지와 기존의 법안소위 의결안과의 기본 취지는 같습니다. 2026년도에도 최대한 의료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대학 총장님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한 만큼, 저희는 2026년도 입학정원이 정부 발표로써 국민들과 그다음에 수험생들에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을 이미 부여했기 때문에 2027년도 이후의 의사인력 규모 추정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2조(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조정에 관한 특례)를 제2조(적용례)로 바꾸어서 저희가 여야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지금 소위에서 의결된 부분에서 일정 정도 수정에 대한 제안과 내용 설명이 있었는데요. 토론을 좀 해 주시지요.**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위원 **소위원회인 강선우 위원장께서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1소위 법안심사위원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이 의료대란이 속히 해결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어느 법안보다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그리고 여러 차례, 오랜 시간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안을 몇 번 바꾸고 바꾸고 바꿔도 만족할 만한 법안이라는 피드백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느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력을 추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급추계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이 법이 당장 시행이 됩니다, 부칙 1조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26년도 모집 정원은 어떻게 하느냐? 물리적으로 수급추계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위원 구성에서부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과 규정을 소위에서 위원님들이 정부 측과 합의해서 모았는데 사실상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이 교육부가 해야 되는 그런 내용까지도 부칙에 담는, 법체계상의 그런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칙 규정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의협도 부칙 규정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남겨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수정안대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른 분들……**

남인순 위원님.

○남인순 위원 **1소위에서 논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수정대안을 갖고 왔는데요. 지난 법안소위에서 2월 27일 날 저희가 의결을 이렇게 한 이유는 26년도 정원에 있어서 그동안 정부가 얘기했던, 2000명을 증원하는 것은 과학적 추계에 의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그런 과학적 추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둬야 돼서 수급추계위를 두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거쳐서 결정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남인순 위원** 물론 그게 안 될 경우에, 26년도 정원에 대해서 4월 30일까지 안 될 경우에는 또 변경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두기는 했는데 아까 장관님이 설명하실 때 그때 얘기했던 거랑 지금 부칙 수정해 온 거랑 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가 2월 27일 날 얘기할 때 그때 박민수 차관이 뭐라 그랬냐면 어쨌든 26년도 정원에 대해서, 그 증원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여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3월 6일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또 이주호 부총리 등등 당정 협의를 해 갖고 그 때 사실은 2026년도 의대 정원을 24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의대 증원한다고 국민들이 그동안 감내해 왔던 고통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건보 재정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갔잖아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없이 부칙을 고치는 안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거 뭐니까? 분명히 저희가 2월 27일 날 법안소위에서 이거 심사했잖아요. 심사한 것에 대해서 시간 지나고 하니까 어차피 26년도 정원은 논의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27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또 가져오신 건데요. 정말 그동안 보건의료재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감내해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 말씀이 없으세요?

장관님, 말씀 좀 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우선 보건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서 제가 국민 여러분 그다음에 환자, 그 가족분들에게 그리고 또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료진께 송구하다는 말씀은 여러 번 표명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법안소위에서 했을 때에는 2026년도 대학 정원도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으로 여야 협의를 해 주셨고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어차피 시간이 흘렀고 또 새 학기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좀 더 수용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수정대안을 낸 거고요.

기본적으로 27년 이후의 의대 정원도 지금 26년도처럼 증원 규모를 그렇게 0으로 정부와 의사단체가 협의해서 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 법제화된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수용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2027년 이후의 정원 규모를 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지금 입시 절차상이나 또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대안으로 제출한 것으로서 법안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러면 26년 정원 관련해서요. 지금 3월 말까지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5058명 유지되는 것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그러니까 교육부장관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저희는 우선 의대생분들이 최대한 돌아와서 수업을 다시 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인순 위원** 아니, 지금 최선 다한다는 걸로 안 되지요. 날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날짜 얼마 안 남았는데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셨으면, 또 지난 1년간

국민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고 의료보험 재정 엄청나게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3월 말까지…… 지금 연세대학교인가 어디는 이미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등록 휴학 시에는 제적 처리하겠다라고. 이렇게 가는 것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남인순 위원 그렇게 갑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남인순 위원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정부가 가져온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국민들한테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이런 식으로 가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하신 장관님의 그런 정도의 경과 설명이나 사과 정도 갖고는 이미 정말 많은 피해를 받은 환자들 또 재정 문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그런데 2027년도 이후의 입학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하는 법안을 오늘 통과해 주셔야 지금 학생들이 돌아오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의료계나 수용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점은 있지만 오늘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민 그 전에 이개호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셔서 이개호 위원하고 김미애 위원님.

○이개호 위원 지금 김선민 위원님이……

○김선민 위원 저 계속 손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아, 그러셨어요?

○이개호 위원 저보다 먼저……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김선민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시지요.

5분입니다. 제가 발언 시간 고지를 못 드렸는데요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 조국혁신당 김선민입니다.

저는 지금 심의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자체의 의결에 반대합니다. 부칙이 아니라 본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회에 오기 전까지 저도 30년 가까이 국가기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해 왔지만 오늘처럼 굴욕적인 날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를 하는데 지금까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이렇게 법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병원협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의대 증원에 찬성한 적이 없었던 의료계를 과반으로 하는 추계위를 법안으로 구성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두들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 법 통과되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당장 들어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이 법이 통과되고 또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이 되면 복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선민 위원** 차관님, 이 법 통과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지금 좀 전에 장관님 답변하신 것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김선민 위원** 1년 넘도록 복지부가 2000명을 과학적 추계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고집을 해 오셨습니다. 이제 와서는 수급추계위를 만들자고 하고 그 추계위도 의료계 관련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하는 법안 이렇게 갖고 오시면서 보건복지부 후배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국회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우리는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족 또한 환자가 될 수 있다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누구도 한 번도 환자안전법이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환자단체에게 과반수 준 적 없습니다. 현재 환자안전법상 국가환자안전위원회에 환자나 시민 추천 위원은 31%에 불과합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상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자나 시민 추천 위원은 14.9%에 불과합니다.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백번을 양보해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당장 전원 복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 기사를 봐도 의료계도 이 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증원이 되든 되지 않든 간에 최소한 추계위 결과가 국민들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균형 있는 구성을 통해서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추계위의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의료계는 이것을 이유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데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김선민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자 과반수 편향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급추계 위원회는 대상 직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추계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구성상에서는 그런 것이 있지만 회의록, 안건, 자료 공개 등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수급추계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요자·공급자·연구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급자 위원 빼고 나머지 분들은 직역에 관계없이 계속 추계위원으로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인력을 뽑는다든지 간호인력을 뽑는다든지 한의사 의료인력을 뽑는다든지 할 때 다 장기적인 의료 수요를 전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료 수요 전망에 있어 가지고 특정 직역에 편향된 그런 전망은 하기 힘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종적으로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또 보정심…… 보정

심은 아시다시피 수요자, 환자단체, 공급자, 정부위원까지 되는 그런 위원회에서 한 번 더 리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공급자 과반수라고 하는 이러한 구성이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이개호 위원님.

○이개호 위원 장관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문제 이것은 지역의료 수준을 균형화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검토 요건이거든요.

지금 전남의 사정은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시고요. 지금 대학까지 통합해 가면서 의대 신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26년 정원 배정 방향이 나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전남도에 의대 증원을 하게 될 경우에 서로 충돌되는 요인은 없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현행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도 정원 수준으로 복귀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신설하는 의대는 그 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상 신청이 이루어지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절차를 알아보니까 설립인가 그다음에 의평원의 예비인증 등이 포함이 돼야지 구체적으로 그 숫자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협의 중이고요. 특히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복지부가 교육부에 공문 보내는 그 사항도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의지가 약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개호 위원 전남 지역 국립의대 신설, 별도의 제로 꼭 함께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전남지사 의견도 좀 꼭 수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지사님도 여러 번 만나 봤습니다.

○이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윤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윤 위원 의사인력, 의료인력 수급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온 문제입니다. 2010년 부근부터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됐는데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논의를 해 보지도 못했고요. 지난 2020년 의대 증원도 전공의들이 집단파업을 하면서 무산됐고 이번의 정부의 의대 증원 역시 1년이 넘는 의료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국민과 환자들이 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의사인력 수급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투명한 논의를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면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사회적 갈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이 수급추계법을 발의한 이유는 의사인력 수급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발의를 했는데 만약 정부가 조금 일찍 적극적으로 이 수급추계법을 검토해 주셨다면 지금 이번에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동결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1년 동안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위해서 참고 회생해 온 그 결과가 마치 무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이런 수급추계법과 같은,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 절차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추계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의료개혁의 여러 제도와 정책, 법률에 있어서도 저는 복지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인력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정부가, 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무산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국민들이 지난 1년 동안 의료대란 속에서도 참고 희생하면서 견뎌 왔던 이유,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의사를 늘리고 의료취약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개혁이 지속돼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버텨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국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는 데 이 법의 통과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오늘 통과되면 복지부가 이 수급추계법에 따라서 향후에 의사인력의 합리적인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부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복지부가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의 경우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이번의 2026년도 모집 인원 결정과 관련해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저희가 국민들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의사를 잘 감안해서 계속 혼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김미애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주민 아니, 이수진 위원님 발언 신청하셔서 이수진 위원님 하고 서미화 위원님하고 두 분이 마무리 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병훈 위원 제일 먼저 이주영 위원님이……

○위원장 박주민 이주영 위원님?

○소병훈 위원 제일 먼저 들었어요.

○위원장 박주민 예, 이주영 위원님.

○이수진 위원 누구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박주민 이주영 위원님.

순서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주영 위원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저는 1소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는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점이 되는 것은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인데 그중 투명성에 대해서는 당시에 차관님께서 속기록 수준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자료까지 백서화하

는 정도의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먼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독립성에 대해서는 보정심의 심의를 거친다는 것이 의료계에 어떤, 그동안에 역사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독립성을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낸 바가 있고, 과반을 의료계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구성이나 자격요건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의료계를 대표하거나 의료계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과연 그렇다면 2027년 의과대학 입시 정원 그리고 2026년 의과대학 입시전형 외에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는 의문을 여러 번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하시기로 의대생들이 복귀를 하면 2026년은 동결하되 복귀하지 않으면 기준대로 증원한 값을 유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만일 올해 학생들이 모두 복귀를 한다면 오히려 그 이후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증원을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로 2000명을 더 증원한 대로 계속 뽑을 경우에 1만 2000명이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과연 이것이 교육부 입장에서는 어떤 취지로 나온 이야기인지,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나온 발언인지 혹은 이것을 협상의 카드 혹은 의료계에서 받아들이기로는 협박의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하나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의료계의 불신이 최고조로 이른 상황에서 사실 이것은, 교육 가능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바꿔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만약에 이 교육이 가능하면 모두가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교육이 가능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생기면 의료계건 정부건 국민이건 모두 지는 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합의했고 뭔가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 시점에 급하게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실제로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등의 직역이 이번에 공청회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차분한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2026년, 2027년 의대 정원을 빨리 정해야 되니까 수급추계위원회를 빨리 만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료계나 전공의·학생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과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들이 복귀할 것이다라는 것이 과연 개연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걸 여쭙고 싶고.

거기에 정부의 다른 노력이 추가되면 복귀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1년 동안 계속해 오셨던 많은 노력들이 사실 더 큰 부작용을 만들기만 했고 현실이나 실무에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놓지 않았던 새로운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20날 의료개혁에 대한 세부안이 추가로 발표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의개특위에는 의료계와 의대생들이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대생은 참여할 수 없겠지만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시점에 추계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발족을 하고 20날에 의료계가 들어오지 않은 의개특위에서 또 다른 개혁안이 나왔을 때 과연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복귀하지 않았을 때 정원을 환원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협상 차원보다는 빨리 좀 복귀를 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복귀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또 모집 인원을 복구할 건가 이런 논의보다는 의대생들이 복귀를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료개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2차 실행방안에서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것은 2차 병원의 역량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비급여·실손 대책 이 세 가지가 중점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차 병원 역량 강화라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그동안 의료계에서도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비급여·실손에 대해서는 일부 개원가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필수 분야 의료진들께서는 또 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만 주요 쟁점 사항인 세부 이행계획 수립 등은 집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차 실행방안 발표가 의대생 복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왜 이렇게 2027년도 입학정원, 그러니까 의사인력 규모 추계를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을 보면 단순히 의사 정원뿐만 아니라 진료과목별 그다음에 지역별 수급추계까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하루빨리 이것을 구성하고 논의를 거쳐 가지고 답을 내놔야 27년도 입학정원 결정의 절차, 대학 입시 절차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코 이것이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27년도 의료 수급추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지금 발언 신청해 주신 분이 좀 있어서……

이수진 위원님 하시고, 서미화 위원님도 발언하시겠다는 겁니까?

○**서미화 위원** 예.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이수진, 서미화 그다음에 양당 간사님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성남 중원구 이수진 위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이 만든 2000명 증원으로 많은 국민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또 증원안을 0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어떤 근거도 없는 정부 여당의 독선적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건강을 외면한 이런 독선적 결정에 대해서는 아마 반드시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법안 관련해서는 제가 반드시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안에다가는, 실제로 제 법에는 의료기관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3분의 1, 수요자단체 3분의 1 그리고 공익적 입장은 대변하는 전문가 3분의 1 이렇게 추계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법안을 저는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계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보정심 위원 비율도 그렇고 저는 실제로 수요자단체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균형 잡힌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 추계기구를 심의기구로 하고 또 전문가 요건을 엄격하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서는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특히 공급자단체에 병협 등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원칙을 담아했습니다. 일단은 보완해서 이 수급추계기구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의사단체라든지 수급추계기구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었고 이 추계기구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은 분명합니다. 추계위 구성을 끄는 것은 여러 상황상 좋지 않고 또 추계위 구성에 대한 다소간 문제의식에도, 문제의식이 있기는 하지만 또 수요자단체도 그런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는 게 낫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면 오늘 통과시키고 추계위를 시행해 나가면서 다시 또 보완해 나가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 진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도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

특별히 말씀 들으실 게 아닌 거지요, 장관님이나? 그렇지요?

○이수진 위원 예.

○위원장 박주민 서미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미화 위원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 위원입니다.

그동안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2000명 증원을 앞세워서 온 나라를 뒤집어엎은 윤석열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참사인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랜 진통 끝에 수급추계법안이 오늘 복지위에서 곧 처리될 예정인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미 지난 수급추계 공청회에서 옥민수 교수께서 강조한 대로 공공의료·지역의료·필수 의료의 관점에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들은 수요공급의 논리가 아닌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향후 복지부가 이 점을 염두해서 수급추계위부터 보정심까지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관님, 그렇게 하시는 거 맞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장관님, 결국 정부가요 2026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장관께서 1년 내내 이 자리에서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과 신설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 전남도에서 대학만 추천하면 정원 배정을 하겠다고 수차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은 완전히 패싱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감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제가 정원 배정을 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리지는 않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서미화 위원** 자,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복지부의 역할이 교육부에서의 사전 절차도 필요하고 그런데, 뭐 책임을 미루지는 않겠습니다.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미화 위원** 장관님, 전남도가 대학을 추천한 작년 11월 이후에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에 대해서 유관 부서에서 업무보고라도 제대로 한번 받아 보셨을까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도지사님하고 협의도 했고 저희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통합학교 설립 신청과 예비인증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잘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미화 위원** 장관님, 정부가요 아무리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부 말뿐이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전남에 의대 추천하라고 복지부에서 하고 나니까 전남도는 도민 혈세로 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의 전통과 명망이 있는 국립대학들이 통합까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전남에서는 수개월 동안 동서가 서로 분열될 위기까지 겪으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서미화 위원** 장관께서, 전남 도민들이 국립의대 신설이라는 희망을 이뤄 보려고 정말 어려운 과정을 감내했습니다. 짐작이나 되십니까, 장관께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통합의대를 하겠다고 한 것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서미화 위원** 이제 와서 장관께서 기조 변화는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또 기다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것은 정말 무책임을 넘어서 아주 무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전남 도민들을 정말 너무 기만하는 거 아닌가, 전남 도민들을 이렇게 대놓고 복지부는 정말 함부로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전혀 그렇지 않고요.

○**서미화 위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서미화 위원** 장관님, 그러면 국립의대 정원 배정 이것은 그냥 말로 때울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요. 어느 정부든지 이런 식으로 말로만 계속하면서 기다리게 하고 진행되는 것이 없고 그러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겠습니까. 장관께서 당사자라면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게 전남도 국립의대 신설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장관께서는 ‘의대 추천해 주면 진행하겠다, 검토하겠다’, 금방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속기록 보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하겠다라는 말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렇게 약속하고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 버리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요 아님 말고 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약속한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어느 대학이 할지 정해 와라 그래서 전남도는 시키는 대로 대학 추천을 해 가지고, 용역까지 해 가지고 통합의대 제출했더니 이제는 교육부랑 협의 중이다 이런 변명, 지금 평계만

앞세우는 듯한 이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전남 도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혜송세월만 보냈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지는 않고요.

○서미화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서미화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관님께서도 교육부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 기존에 추진되는 의대 증원하고 무관하게 정원 배정이 되도록 협조하라는 공문을 지난번 제가 여쭤볼 때 보낼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김국일 국장께서도 대면 보고하면서, 대면 보고하는 자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복지위에서 수급추계 법안이 통과되는 상황이고 법에 따라 의료인력 추계하면 반드시 전남 봇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급추계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사인력 규모뿐만 아니라 지역별 의사 규모도 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지역별 의사 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정부 의지도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분하게 좀 봐 주시면 저희 정부가 말씀드린 대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러면 전남 지역 봇의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저는 알고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복지부가 교육부에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따른 정원 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공문을 좀 보내시고 정부에서 내년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전남 국립의대 봇의 정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공문을 좀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그리고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알겠습니다.

○서미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주민 다음은 김미애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정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의료개혁을 출발했고 초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의사 수 증원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의대 증원을 했는데 2000명을 발표하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요구도 있었지요. 장관님, 맞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수급추계위를 법제화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할 때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안심사1소위의 두 번의 심사 이후에 또 공청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입법할 때는 당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해서, 그런 완전한 법은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급추계위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구한 것들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였습니다.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23조의2 규정을 신설했고. 가장 중요한 게 독립성, 전문성이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느냐? 과학적 근거,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위원이 엄격해야 됩니다. 왜냐? 나중 되면 또 전문성 없는 위원들이 수급추계를 했다 이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전의 양면같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 구성을 좀 엄격하게 했어야 되고.

그러면 독립성이 있는가 이걸 보면 수급추계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존중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좀, 그나마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가급적이면 의협의 의견을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들었고 그걸 반영하는 대안, 대안, 대안을 마련해 왔는데도 계속 부족하다고 해서 마지막에는 ‘그러면 직접 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구체적인 안을 좀 주세요’ 했는데 그럴 때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27년은 제대로 된 수급추계위원회가 출범해야 됩니다. 지금 이 법이 공포한 날 시행하는데 그래도 빨라도 4월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대로 준비해서 27년 것은 내년 4월 말까지 정해야 되겠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수급추계위원회 심사 결과는 훨씬 전에 끝내야 됩니다. 결과는.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이런 내용으로 알리고 또 협의해서 정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부처 2조에 정한 것은 사실은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그런 결과입니다. 당시에 우리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고 26년 정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해서 가급적이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고민했던 고민의 산물인데 그러나 부처 간의 권한이 충돌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안으로 2조를 마련했고 이것은 적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는 수용해야 되고.

지금이라도 저는, 어제도 ‘구체적 안을 좀 줘 보세요’라고 했는데 사실은 구체적 안은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이 출발하면서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는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문제가 있으면 개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장 현장 또 우리 국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수급추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아까 존경하는 남인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의대 정원 축소를 발표했다는 취지인데 그건 아니고, 의대 정원을 축소한다는 게 아니고 26년도 모집 인원을 불가피하게, 의과대학의 학습현

장에 사실상 어려움은 생겼습니다. 2년 차를 한꺼번에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어려움 그다음에 의대 학장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비판을 감내합니다. 당연히 비판을 예상했지만 그래도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 나가는 게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의료계 정상화가 의료개혁만큼이나 중요하고 이것은 결국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이 안은 통과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민 일단 그러면 강선우 간사님 말씀 듣고 남인순 위원님 말씀 들을게요.

○남인순 위원 법안에 관한, 내용에 관한 건데……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강선우 간사님, 먼저 남인순 위원님 발언……

○강선우 위원 예, 남인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남인순 위원 그러면 간단한 거니까……

○위원장 박주민 남인순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남인순 위원 장관님, 추계위원회 조항에다가 독립성, 자율성 이런 것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그 일을 하는 부분은 수급추계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심사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아마 의료계에서도 그런 의견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2000명 추계할 때도 KDI하고 보사연하고 하고 그다음에 대학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000명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할 때.

그래서 거기 지정·운영할 수 있다, 23조의3(수급추계센터)에 1·2항이 있는데 3을 뒤에서 대학이나 민간전문기관 여기도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것을 제가 계속 제기를 했는데 안 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출 수도 있고 정부출연기관에 출 수도 있고 다 출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대학기관이나 민간전문기관 이런 데를 빼 필요가 있나요? 그게 빼는 것, 거기를 여기에 명시하는 게 문제가 안 되면 여기다가, 3에다 좀 넣어 주시면…… 이건 또 의료계 쪽의 요구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용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넣는 건 어떻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 수급추계센터는 어떤 수급추계 모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급추계위원회가 정립한 모형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이나 민간연구기관을 포함하면 공급자, 의료계에서는 만족하실 수도 있지만 수요자나 또 다른 환자단체에서는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단,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또 그 운영한 성과를 봐 가면서 확대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인순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급추계센터 독립성·자율성을 보장한다고 위에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시뮬레이션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일정하게 어떤 실무적인 일은 수급추계센터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추계위원회가 사무국을 갖추는 건 아니잖아요. 추계위원회가 사무국을 갖추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추계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서 여기에 그런 부분들을, 독립성과 연관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굳이 안 넣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거기다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세 가지 유형을 넣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걸 굳이 뺄 필요가 있나라는 거예요,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오늘 법안은 그냥 현행대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의 운영 과정을 봐 가면서 필요할 경우에 추가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마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강선우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

○**강선우 위원** 장관님, 이번에 처리된 법안이 분명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미흡한 차선책일 것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정부 또한 이번 수급추계위 법안과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의대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연계시켜서 말씀도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일견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수급추계위 법안의 본래의 목적은 향후 의료인력을 정함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자, 과학적 근거를 갖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동의합니다.

○**강선우 위원** 이 법안이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에 앞으로 정부 노력이 더더욱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다시는 이번 의료대란을 촉발시킨 갈등과 논쟁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잊어 버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 원흉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는 점 결코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정을 잠깐 복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가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고비 고비마다, 중요한 타임 때마다 의협은 살라미식으로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의협의 최종적인 목표는 3월 이후에 통과를 시킬 건지 말 건지 논의를 하자는 거였지만 그것을 12월에서 1월로 미뤄 달라, 1월에서 2월로 미뤄 달라, 2월에서 공청회로 미뤄 달라, 공청회 이후에 2월로 다시 미뤄 달라, 2월이 되니까 3월로 미뤄 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타임라인 때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해당 시기를 잘 살펴보시면 인턴 모집하는 게 지난해 12월부터지요? 레지던트 모집하는 올해 1·2월 또 의과대학 개강 앞둔 3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돌아갈 수 있는 시기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 돌아갈 수 있는 시기에 어떤 하나의 명분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본인들이 못 돌아가게 할 파워가 약해지니까 계속해서 혼방을 놨던 거지요. 그리고 이 시기 때 집중적으로 어떤 일도 이뤄졌느냐 하면 집단사직과 동맹휴학 이탈자 색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단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 작성하던 그 시기와 딱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수급추계위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12월부터 3월 정도까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시기였고 의협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이게 명분이 돼서 일부라도 돌아가면 본인들 내부적으로 균열이 생기니까 단속 같은 걸 더 더욱 강하게 했던 거지요.

그런데 저는 복지부가 이 타임라인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타임라인에 굳이 매달려서, 3월 이후, 3월 이후, 3월 이후라고 의협이 주장을 계속했던 그 이유를 저는 복지부가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지요.

결과적으로 의협은 원하는 작은 성과 성취했지 않습니까? 26년도 0원이라는 숫자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협은 거기서 멈추지 않겠지요. 3058에서 깎아내려 가는 딜을 하려고 이제 또 들겠지요. 복지부 이것 모르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요.

이것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왜 3월까지 미뤄 달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하는 커튼 뒤에서는 색출하고 블랙리스트 올리고 그 작업이 얼마나 가열차게 이뤄졌었는지 다시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관련자들 더 적극적으로 고발하셔야 돼요. 불법행위예요.

그리고 계속 공식적으로 요구를 안 해서, 계속 커튼 뒤에서 요구를 해서 결국은 1소위 전날에 박민수 차관과 의협과 위원장과 간사가 비공식적으로 만났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당시 의협에서 요구한 공급자 과반에서 병협 빼는 안까지 정부가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의협이 요구한 것 다 들어줬잖아요. 안 들어준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공식 입장 냈어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대응 안 했습니까? 공개하셨어야지요. 왜 적극적으로 대응 안 했어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계기로 사직 전공의 복귀하고 휴학 의대생 복귀할 수 있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 법안의 목적이 단지 지금의 의료 현장 수습, 교육 현장 수습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누군가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특정 집단이 원하는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난 정부의 결정 문제를 바로잡고 이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국회라는 공론의 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의사도 국민이고 그러나 의사가 아닌 국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 누가 피해자인가라는 질문이 주는 울림은 의협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달려 온 대화 방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정부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물러섬 없이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됩니다.

수급추계위 운영에 있어서 의협이 추천해야 될 봉이 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선우 위원** 언제까지 추천할 건지 확실하게 답을 받아 내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강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전문가를 받아서 구성할 수 있고 이후의 제도 작동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여야 위원님들께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계속 추계위원회가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여러 사항이 있는데 불법행위를 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원칙을 세워 가지고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매진하라는 말씀 유념하고 흔들림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주민 다들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제가 이 법 관련돼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환자단체들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다 만나 봤는데요. 이 여러 단체들이 생각이 다르면서도 유일하게 같은 주장을 하는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보정심을 못 믿겠다는 얘기는 다 똑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정심 관련된 개선안을 좀 마련하는 게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지금 고개 끄떡이시고 하시는데 보정심 관련된 개선안을 고민해서 좀 가지고 와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이후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는 일부개정법률안들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을 의결해야 되는데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7항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해야 되는데 오늘 방금 논의하신 수정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 위원장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주민 김남희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이수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집해 온 소득대체율 43% 주장에 대하여 대승적으로 양보하여 받아들이고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과 군복무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를 포함한 연금개혁에 합의했습니다. 그 이후 국

민의힘과 정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모수개혁, 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만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연금특위 구성에 여야 합의 처리 조문을 넣지 않으면 국민연금법 처리를 안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까? 어차피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나 합의 처리 조문 없어도, 특위에서 합의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까? 있으나 마나 한 조문을 들어서 국회에서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에 대한 여야 합의를 갑자기 가로막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까? 대체 몇 번째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까? 국민들께 죄송하지도 않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께서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 저도 말씀드려야지요.

○**위원장 박주민** 잠깐만요.

이수진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는데 연금에 관련된 얘기십니까?

○**이수진 위원** 저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시지요. 순서대로 하시지요.

○**김미애 위원** 하세요.

○**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이수진 위원님 하시고……

○**이수진 위원** 저는 간호법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은 우리 22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중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첫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비하고 있고 3월 말 입법예고 할 계획이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예,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는 하위법령들에 간호법 제정 취지와 또 현장 간호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시행규칙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의료대란으로 환자 외에 간호사나 환자들이 또다시 희생이 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규칙 초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진료지원 업무 조정위원회를 두어서 전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별표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각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간호사 업무 범위 운영위원회에서 별표 이외의 업무를 신청해서 이 업무들을 예비적합, 적합, 부적합으로 심사를 하고 예비적합일 경우에는 조건부로 1년간 전담간호사 업무로 또 인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의료기관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진료지원 업무로 했던 별표 이외 업무를 1년 동안 또 조건부로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업무를 지금 계속해서 엮어 주고 있지요. 결국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업무 이외에 기존 업무, 추가 업무를 각 의료기관에서 판단해서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전담간호사 업무로 인정해서 시키는 거예요.

이 진료지원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책임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매

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규칙 초안은 병원별 상황에 따라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게 결국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하고 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환자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그 업무 범위를 달리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자격을 부여한다든가 보상 수가, 배치 기준은 아예 없습니다. 전담간호사 치료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보호책도 당연히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제정하면 결국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전담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간호사들을 밀어 넣는 방식일 뿐 이게 결국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조속히 잡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주민 예, 양당 간사님과 협의해서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간사님.

○김미애 위원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 연금개혁, 모수개혁 처리를 신속히 촉구를 하셨는데 저는 정치라는 게…… 협의, 합의 이게 국회법에 보면 수십 번 나옵니다. 그 처리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당초에 연금개혁을 주장하면서의 각 당의 스탠스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병행해야지 실질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절충이 된 거지요, 우선 모수개혁은 상임위에서 하고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하자.

그런데, 제가 21대도 특위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도 보면 주문 다항에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가 있습니다. 구성 비율도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율이 여 7, 약 9입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에 있어서는 우리 당은 이 합의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당내 반대의견이 상당합니다. 특히 청년세대들이 도대체 이걸 개혁이라고 합의했느냐라고 비난이 빗발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소수 여당이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합의가 너무 어렵다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고.

그런데 구태여 지난 21대도 주문에 있었던 ‘합의 처리한다’ 이걸 왜 삭제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다수당이……

○김남희 위원 아니, 모수개혁 먼저 하자고 얘기해 놓고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김미애 위원 다수당이 이것을 삭제하자는 그 이면이 뭔지 저는 몹시 궁금합니다.

○김남희 위원 그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김미애 위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만약에 없는 것을

새로 넣는다면 뭐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합의 처리가 기본입니다.

○김남희 위원 당연히 합의 처리 되겠지요, 국민의힘이 위원장인데.

○김미애 위원 합의 처리가 기본인데 그 주장을, 왜 구태여 삭제하자고 하는지 저는 그걸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남희 위원 그것 때문에 모수개혁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미애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저기 김남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때는 좀 가만 계셔 주세요. 그게 예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은 지금 지도부에서 아마 11시부터 의장님 주재하에 만나고 계실 텐데 거기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게 정리가 되면 소위를 또 개최해서 심사를 계속하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2소위를 열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 위원님 네 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계속하자고 요구했던 것도 민주당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하지 않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주민 지금 합의 처리 기조가 양당 간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다려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률안 의결에 따른 정부 측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강선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될 경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구성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법안심의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8)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0)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7)

1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1)

12.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1)
1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0)
1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6)
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3)
1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5)
1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0)
1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6)
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5)
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1)
2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0)
22.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99)
2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6)
2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4)
2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6)
2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0)
2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6)
28.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3)
29. 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36)
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2)
3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4)
3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6)
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2)
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0)
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6)
3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7)
3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7)
3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9)
3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2)
4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2)
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9)
4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4)
4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9)
44.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8)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8)
4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9)

4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6)
48.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2)
4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1)
50.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3)
51.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20)
52.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5)

(11시58분)

○위원장 박주민 다음으로 법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 단말기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이지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주민 예?

○백혜련 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면 안 될까요, 검토보고도?

○위원장 박주민 검토보고서 서면으로 대체할까요, 그러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52항까지의 법률안은 소관 구분에 따라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법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원내대표 간 회동을 바라보면서 일단 정회를 좀 해 둘까 했는데요. 길어지고 있다 그리고 상황이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서 산회를 일단 하고 회동 결과에 따라서 이후 논의 절차는……

○김미애 위원 그렇게 하면 2소위를 또 열고 해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위원장 박주민 이후 논의 절차는 좀 논의해 보시지요. 어떻게 합의됐는지 한번 보고요.

○남인순 위원 전체회의에서 그냥 한 번에 해 버리지요.

○위원장 박주민 그것은 회동 결과를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 보좌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강선우 김남희 김미애 김선민 김예지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서명옥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안상훈 이개호 이수진 이주영 장종태 천준호 최보윤
추경호 한지아

○청가 위원(2인)

백종현 전진숙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전문위원 정경윤

전문위원 오세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 박민수

대변인 정호원

기획조정실장 김혜진

사회복지정책실장 이스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은성호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의료개혁추진단장 정경실

정책기획관 임호근

연금정책관 진영주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기획조정관 우영택

의약품안전국장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 신준수

질병관리청

청장 지영미

차장 임숙영

기획조정관 이상진
감염병정책국장 홍정익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조경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0.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0.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3)

이상 2건 2월 21일 회부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1.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1.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1.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1)

이상 4건 2월 24일 회부됨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4)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5. 2. 24.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2)

이상 6건 2월 25일 회부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5.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5)

2월 26일 회부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6.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9)

장애인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6.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6.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3)

이상 3건 2월 27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0)

이상 6건 2월 28일 회부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8. 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1)

이상 9건 3월 4일 회부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9)

이상 4건 3월 5일 회부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5.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5.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5)

이상 2건 3월 6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6.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이상 3건 3월 7일 회부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7.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7.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7.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6)

이상 3건 3월 10일 회부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0.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4)

이상 5건 3월 11일 회부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1.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1.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1.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1.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2)

이상 4건 3월 12일 회부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7)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9)

이상 4건 3월 13일 회부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5)

이상 5건 3월 14일 회부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8)

이상 3건 3월 17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0)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2. 24.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6)

**이상 3건 2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27.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9)

**2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에너지급여법안**

(2025. 2. 2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7)

**3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2025. 2. 27.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4)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2. 28.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5)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025. 2. 28.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3)

**이상 3건 3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5. 3. 5.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0)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2025. 3. 5.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2)

**이상 2건 3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12·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2025. 3. 7.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7.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이상 2건 3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3.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7)

**3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4.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3. 14.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이상 2건 3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보건복지부	3	-	5	1	-	19
식품의약품안전처	-	3	-	4	2	4
질병관리청	1	-	-	1	-	3